

드파인광안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9.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9.20(금)	24.09.30(월)	24.10.02(수)	24.10.04(금)	24.10.11(금)	24.10.12(토) ~ 24.10.18(금)	24.10.22(화) ~ 24.10.24(목)

- '드파인광안' 견본주택 및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방문 안내**
 - '드파인광안'은 홈페이지(<https://www.df-ga.co.kr>)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단, 청약 및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의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드파인광안' 분양상담 전화(☎051-757-8856),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사례 및 유의사항

-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적격 사례**
 - 사례1: 만 35세의 미혼인 청약자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기간[30년 이상]을 선택한 경우
 - ▶ 무주택기간 산정 : 5년으로 선택해야 함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 [단, 만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사례2: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세대분리 된 배우자가 25평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주택자가 아님 → 청약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 : 부부가 각각의 주민등록표에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
 - 사례3: 만 65세 이상인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한 경우
 - ▶ 무주택자가 아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사례4: 청약자(무주택)와 배우자(무주택)가 세대분리 되어있고, 배우자가 60세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증인데 무주택으로 청약한 경우
 - ▶ 무주택자가 아님 →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리된 세대의 세대원(형제 자매는 해당없음) 또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사례5: 청약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으나 2020년도에 공급된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으로 청약한 경우
 - ▶ 무주택자가 아님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된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

■ **부양가족수 부적격 사례**

- 사례6: [청약자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세대의 부양가족을 총 가족수인 4명으로 기재한 경우
▶ **부양가족은 3명입니다.** →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합니다.**
- 사례7: [청약자 본인 / 배우자 / 부친(만60세 이상, 주택소유)]세대의 부양가족을 2명으로 기재한 경우
▶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 부친이 만60세 이상으로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8: [청약자 본인 / 배우자 / 부친(무주택, 세대주)] 세대의 부양가족을 2명으로 기재한 경우
▶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례9: [청약자 본인 / 배우자 / 아들, 며느리] 세대의 부양가족을 3명으로 기재한 경우
▶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 직계비속(자녀)은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례10: 청약자 본인 / 배우자 / 아들(32세, 미혼, 8개월 전 전입) 세대의 부양가족을 2명으로 기재한 경우
▶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 **만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자녀)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부적격 사례**

- 사례11: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중 단독세대로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전용 84㎡타입에 청약을 한 경우
▶ 청약가능 면적 초과로 부적격 →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 사례1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년전 전입한 만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세대로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한 경우
▶ 부양의무기간 미달로 부적격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허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df-ga.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9.2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2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2023.09.20.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9.30.(월)	24.10.02.(수)	24.10.04.(금)	24.10.11.(금)	24.10.12.(토) ~ 24.10.18.(금)	24.10.22.(화) ~ 24.10.24.(목)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파인광안 견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136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시 수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I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과-42016호 (2024.09.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40-3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1층 10개동 총 1,233세대(조합 597세대, 임대 64세대, 보류시 5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567세대
[특별공급 282세대 / 기관추천 56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102세대, 생애최초 51세대, 노부모부양 1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6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중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계		
민영 주택	2024000387	01	059.8951	59	59.8951	22.2144	82.1095	40.2527	122.3622	32.8797	88	9	6	16	8	2	41	47	7
		02	078.8636A	78A	78.8636	24.5296	103.3932	53.0006	156.3938	41.4025	74	7	8	13	7	3	38	36	4
		03	078.2765B	78B	78.2765	25.9660	104.2425	52.6061	156.8486	41.7426	105	10	12	19	9	3	53	52	4
		04	084.9514A	84A	84.9514	25.6157	110.5671	57.0920	167.6591	44.2752	71	7	7	13	6	2	35	36	10
		05	084.8923B	84B	84.8923	26.9088	111.8011	57.0523	168.8534	44.7694	229	23	23	41	21	7	115	114	12
합 계											567	56	56	102	51	17	282	285	37

- ※ 각 주택형 청약 신청 시 동·호수 배정은 해당되는 주택형의 동·호수 중에서 임의배정 되오니 단지 및 동호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계약면적 등 합계면적은 소수점 이하 오차 발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만을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공급면적 비율로 분배되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기반시설(도시가스 등) 부지제공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유형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 분 (주택형)		59.8951	78.8636A	78.2765B	84.9514A	84.8923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	2	1	6	12	
	장기복무제대군인	1	1	1	1	2	6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1	1	1	1	3	7	
	중소기업근로자	2	1	2	1	5	11	
	장애인	부산광역시	1	1	2	1	3	8
		울산광역시	1	1	1	1	2	6
경상남도		1	1	1	1	2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	8	12	7	23	56	
신혼부부 특별공급		16	13	19	13	41	10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3	3	2	7	17	
생애최초 특별공급		8	7	9	6	21	51	
합 계		41	38	53	35	115	28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 원]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호구분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5%)	2차(15%)	3차(15%)	4차(15%)		
								계약시	계약후 20일 이내	2024.12.24	2025.06.24	2025.11.24	2026.03.24		입주시
59	88	105동 (3,4,5호) 108동 (3,4호) 109동 (1,2호)	1층	5	246,925,000	458,575,000	705,500,000	10,000,000	25,275,000	105,825,000	105,825,000	105,825,000	105,825,000	246,925,000	
			2층	7	261,240,000	485,160,000	746,400,000	10,000,000	27,32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261,240,000	
			3층	7	272,720,000	506,480,000	779,200,000	10,000,000	28,960,000	116,880,000	116,880,000	116,880,000	116,880,000	272,720,000	
			4층	7	284,165,000	527,735,000	811,900,000	10,000,000	30,595,000	121,785,000	121,785,000	121,785,000	121,785,000	284,165,000	
			5~9층	27	292,775,000	543,725,000	836,500,000	10,000,000	31,825,000	125,475,000	125,475,000	125,475,000	125,475,000	292,775,000	
			10~14층	10	295,645,000	549,055,000	844,700,000	10,000,000	32,235,000	126,705,000	126,705,000	126,705,000	126,705,000	295,645,000	
			15~19층	6	301,385,000	559,715,000	861,100,000	10,000,000	33,055,000	129,165,000	129,165,000	129,165,000	129,165,000	301,385,000	
		109동 (5,6호)	1층	2	240,905,000	447,395,000	688,300,000	10,000,000	24,415,000	103,245,000	103,245,000	103,245,000	103,245,000	103,245,000	240,905,000
			2층	2	254,870,000	473,330,000	728,200,000	10,000,000	26,410,000	109,230,000	109,230,000	109,230,000	109,230,000	109,230,000	254,870,000
			3층	2	266,035,000	494,065,000	760,100,000	10,000,000	28,005,000	114,015,000	114,015,000	114,015,000	114,015,000	114,015,000	266,035,000
			4층	2	277,235,000	514,865,000	792,100,000	10,000,000	29,605,000	118,815,000	118,815,000	118,815,000	118,815,000	118,815,000	277,235,000
			5~9층	8	285,600,000	530,400,000	816,000,000	10,000,000	30,8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285,600,000
			10~14층	2	288,400,000	535,600,000	824,000,000	10,000,000	31,2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288,400,000
			15~19층	1	294,000,000	546,000,000	840,000,000	10,000,000	32,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126,000,000	294,000,000
78A	74	104동 (5호) 106동 (5호) 107동 (5호) 109동 (3호)	1층	3	304,605,000	565,695,000	870,300,000	10,000,000	33,515,000	130,545,000	130,545,000	130,545,000	130,545,000	304,605,000	
			2층	4	322,280,000	598,520,000	920,800,000	10,000,000	36,040,000	138,120,000	138,120,000	138,120,000	138,120,000	322,280,000	
			3층	4	336,420,000	624,780,000	961,200,000	10,000,000	38,060,000	144,180,000	144,180,000	144,180,000	144,180,000	336,420,000	
			4층	4	350,560,000	651,040,000	1,001,600,000	10,000,000	40,080,000	150,240,000	150,240,000	150,240,000	150,240,000	350,560,000	
			5~9층	20	361,130,000	670,670,000	1,031,800,000	10,000,000	41,590,000	154,770,000	154,770,000	154,770,000	154,770,000	361,130,000	
			10~14층	19	364,665,000	677,235,000	1,041,900,000	10,000,000	42,095,000	156,285,000	156,285,000	156,285,000	156,285,000	156,285,000	364,665,000
			15~19층	11	371,735,000	690,365,000	1,062,100,000	10,000,000	43,105,000	159,315,000	159,315,000	159,315,000	159,315,000	159,315,000	371,735,000
			20층 이상	9	375,270,000	696,930,000	1,072,200,000	10,000,000	43,610,000	160,830,000	160,830,000	160,830,000	160,830,000	160,830,000	375,270,000
78B	105	104동 (6호) 106동 (6호) 107동 (6호)	1층	4	304,115,000	564,785,000	868,900,000	10,000,000	33,445,000	130,335,000	130,335,000	130,335,000	130,335,000	304,115,000	
			2층	4	321,790,000	597,610,000	919,400,000	10,000,000	35,970,000	137,910,000	137,910,000	137,910,000	137,910,000	321,790,000	
			3층	4	335,895,000	623,805,000	959,700,000	10,000,000	37,985,000	143,955,000	143,955,000	143,955,000	143,955,000	335,895,000	
			4층	4	350,000,000	650,000,000	1,000,000,000	10,000,000	4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350,000,000	
			5~9층	20	360,570,000	669,630,000	1,030,200,000	10,000,000	41,510,000	154,530,000	154,530,000	154,530,000	154,530,000	360,570,000	
			10~14층	20	364,105,000	676,195,000	1,040,300,000	10,000,000	42,015,000	156,045,000	156,045,000	156,045,000	156,045,000	156,045,000	364,105,000
			15~19층	19	371,175,000	689,325,000	1,060,500,000	10,000,000	43,025,000	159,075,000	159,075,000	159,075,000	159,075,000	159,075,000	371,175,000
20층 이상	30	374,710,000	695,890,000	1,070,600,000	10,000,000	43,530,000	160,590,000	160,590,000	160,590,000	160,590,000	160,590,000	374,710,000			
84A	71	102동 (1,2호) 103동 (1,2호) 104동 (2,4호) 106동 (2,3호) 107동 (2,3호) 108동 (1,2호)	1층	7	349,335,000	648,765,000	998,100,000	10,000,000	39,905,000	149,715,000	149,715,000	149,715,000	149,715,000	349,335,000	
			2층	12	369,635,000	686,465,000	1,056,100,000	10,000,000	42,805,000	158,415,000	158,415,000	158,415,000	158,415,000	369,635,000	
			3층	12	385,875,000	716,625,000	1,102,500,000	10,000,000	45,125,000	165,375,000	165,375,000	165,375,000	165,375,000	385,875,000	
			4층	3	402,115,000	746,785,000	1,148,900,000	10,000,000	47,445,000	172,335,000	172,335,000	172,335,000	172,335,000	402,115,000	
			5~9층	11	414,330,000	769,470,000	1,183,800,000	10,000,000	49,190,000	177,570,000	177,570,000	177,570,000	177,570,000	414,330,000	
			10~14층	12	418,390,000	777,010,000	1,195,400,000	10,000,000	49,770,000	179,310,000	179,310,000	179,310,000	179,310,000	179,310,000	418,390,000
			15~19층	9	426,510,000	792,090,000	1,218,600,000	10,000,000	50,930,000	182,790,000	182,790,000	182,790,000	182,790,000	182,790,000	426,510,000
			20층 이상	5	430,570,000	799,630,000	1,230,200,000	10,000,000	51,510,000	184,530,000	184,530,000	184,530,000	184,530,000	184,530,000	430,570,000
			84B	229	102동 (4,5호) 103동 (4,5호) 104동 (1,3호) 105동 (1,2호) 106동 (1,4호) 107동 (1,4호)	1층	8	346,465,000	643,435,000	989,900,000	10,000,000	39,495,000	148,485,000	148,485,000	148,485,000
2층	12	366,590,000				680,810,000	1,047,400,000	10,000,000	42,370,000	157,110,000	157,110,000	157,110,000	157,110,000	366,590,000	
3층	12	382,690,000				710,710,000	1,093,400,000	10,000,000	44,670,000	164,010,000	164,010,000	164,010,000	164,010,000	382,690,000	
4층	12	398,790,000				740,610,000	1,139,400,000	10,000,000	46,970,000	170,910,000	170,910,000	170,910,000	170,910,000	398,790,000	
5~9층	60	410,900,000				763,100,000	1,174,000,000	10,000,000	48,700,000	176,100,000	176,100,000	176,100,000	176,100,000	176,100,000	410,900,000

		10~14층	57	414,925,000	770,575,000	1,185,500,000	10,000,000	49,275,000	177,825,000	177,825,000	177,825,000	177,825,000	414,925,000
		15~19층	38	422,975,000	785,525,000	1,208,500,000	10,000,000	50,425,000	181,275,000	181,275,000	181,275,000	181,275,000	422,975,000
		20층 이상	30	427,000,000	793,000,000	1,220,000,000	10,000,000	51,000,000	183,000,000	183,000,000	183,000,000	183,000,000	427,000,000

■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웁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웁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추후 지정하여 통보하는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절반씩 부담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IV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조건, 청약통장 자격조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p>		
추천기관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부산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rowspan="2">-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r> <tr> <td rowspan="2">해당 시·도 거주기간(5)</td> <td rowspan="2">15</td> <td>10년 이상</td> <td>15</td> <td rowspan="2">-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0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p> <p>■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9.2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비고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IV-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5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9.2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p>*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	--	--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40%;">구분</th> <th style="width: 20%;">가점제</th> <th style="width: 40%;">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인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9.30.(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모바일 : www.applyhome.co.kr 사업주체 건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136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4.10.02.(수) 09:00~17:30		
	2순위	2024.10.04.(금)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

구 분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 2순위) 당첨자	2024.10.1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공고단지 청약연습 (민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0.11.(금) ~ 2024.10.20(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10.1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정당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10.12.(토) ~ 2024.10.18.(금) (10:00~16:30) (7일간) 	'드파인광안' 견본주택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136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청약신청자에 한하여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함.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 및 제54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구비서류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및 일반공급 당첨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특별공급은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x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상세)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건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포함)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건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표4) 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건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신고일 확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세 입증서류 (납부내역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 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자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표4)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산산정기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피부양 직계비속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대조, 위임장 날인
	○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추첨제 포함)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 대리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해외 근로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불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가점제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안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직인 날인 없거나 직인 날인되더라도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공통서류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신규취업자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계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 ③ 세무서/등기소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공단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 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④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 날인) ② ①번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①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무직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검본주택 ②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서류제출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 ①~④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④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4] 신희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자산가액 증빙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 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①, ② 주민센터 ③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전체 화면 캡처)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VI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일정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4.10.22(화) ~ 2024.10.24(목) 3일간 (10:00~16:30)	‘드파인광안’ 건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136번지)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자(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정부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자(본인)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위임장	계약자(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114001-04-215872	광안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1인)

- ※ 상기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상기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 분양대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상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재공고 후 청약방법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남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알선 조건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2차 계약금 납부 이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담보대출 유무,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주택 소유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 대출")관련 내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금융기관을 알선해 드리며,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치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이자 납부(이하 "중도금 대출 무이자" 등)에 대한 조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중도금 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및 사업주체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 대출 시 대출 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유상옵션 포함)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은 대출 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타대출 조건 등은 대출 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중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 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IX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X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는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시공 중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발코니 확장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건본주택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2.18. 개정시행)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가 입주 후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 입주자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가 입주 후 발코니를 임의로 개별 변경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안방앞발코니1)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출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타세대의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출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가스입상배관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시 위치에 따라 유리난간이 포함된 이중창 또는 난간이 없는 이중창(또는 단창)이 설치됩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가스입상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시공사 설치 위치 및 상부 천장의 형태/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추가선택 품목

1)시스템 에어컨

일반형 에어컨(무풍)

[단위 : 원 / V.A.T 포함]

약식표기	설치 개소	설치 위치	금 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제조사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1안_2대	거실+안방	5,090,000	509,000	4,581,000	택1	삼성전자
	2안_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8,320,000	832,000	7,488,000		
78A	1안_2대	거실+안방	5,320,000	532,000	4,788,000	택1	
	2안_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8,670,000	867,000	7,803,000		
78B	1안_2대	거실+안방	5,320,000	532,000	4,788,000	택1	
	2안_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8,670,000	867,000	7,803,000		
84A	1안_3대	거실+주방+안방	6,360,000	636,000	5,724,000	택1	
	2안_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940,000	994,000	8,946,000		
84B	1안_3대	거실+주방+안방	6,360,000	636,000	5,724,000	택1	
	2안_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2,020,000	1,202,000	10,818,000		

고급형 에어컨(무풍 + 공기청정)

[단위 : 원 / V.A.T 포함]

약식표기	설치 개소	설치 위치	금 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제조사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1안_2대	거실+안방	6,010,000	601,000	5,409,000	택1	삼성전자
	2안_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9,940,000	994,000	8,946,000		
78A	1안_2대	거실+안방	6,130,000	613,000	5,517,000	택1	
	2안_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10,170,000	1,017,000	9,153,000		
78B	1안_2대	거실+안방	6,130,000	613,000	5,517,000	택1	
	2안_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10,170,000	1,017,000	9,153,000		

84A	1안_3대	거실+주방+안방	7,630,000	763,000	6,867,000	택1
	2안_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2,250,000	1,225,000	11,025,000	
84B	1안_3대	거실+주방+안방	7,630,000	763,000	6,867,000	택1
	2안_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5,020,000	1,502,000	13,518,000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미 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안방, 거실에만 시공됩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신형세대는 기본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을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 세대의 냉매배관 설치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그에 따라 평형/타입별 실외기용량 및 전기배선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타입별 계획상의 이유로 유상옵선 계약 전 각 옵선 항목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가전기기 / 시스템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위치	금액	계약금 (10%_계약시)	잔금 (90%_입주지정일)	비고
가전기기	3구 인덕션	전타입	주방	3,010,000	301,000	2,709,000	엘리카 / PRD220092
	비스포크 후드			1,060,000	106,000	954,000	삼성전자 / NK90B8770AW
	비스포크 1도어 키친핏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7,510,000	751,000	6,759,000	냉장고 (삼성전자 / RR40C7995AP/7895AP) 냉동고 (삼성전자 / RZ34C7(9)(8)65AP/7865AP)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 RQ34C7945AP/7845AP) 틀장 포함
	비스포크 빌트인 오븐			960,000	96,000	864,000	삼성전자 / NQ50T8539BW
	13인치 스마트 주방TV			290,000	29,000	261,000	코스텔 / CSK-135AF
	13인치 홈네트워크 월패드		거실	130,000	13,000	117,000	씨브이네트 / CSW-2200
시스템	환기시스템		실외기실	1,000,000	100,000	900,000	LG 전자

- ※ 상기 선택품목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전기기 유상옵선 선택 시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한 발주 등을 고려하여 선택사항 변경 및 해약은 불가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가전기기 유상옵선 계약이 불가하오니 최종 계약 일정을 확인바랍니다.
- ※ 가전기기 유상옵선 선택 시 기기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 하실 수 없으며,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하니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가전기기 유상옵션 품목은 본 아파트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유상옵션 선택 후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필히 비교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전기기 유상옵션 품목의 상세 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 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전기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인덕션 유상옵션을 선택할 경우 주방가구 후면에 전원연결용 단자대가 설치되며(소비전력 4.5kW 기준), 해당 옵션을 미선택할 경우 콘센트가 설치됩니다.(소비전력 3.3kW 기준)
- ※ 인덕션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kw를 초과하는 전기쿠파, 전기레인지어를 설치할 경우 "을"이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 인덕션 유상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쿠파가 제공되며, 주방후드의 설치 위치는 설치 기준 및 관련법에 따라 견본주택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시공되며, 후드장의 사이즈도 조정되오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 비스포크 1도어 키친핏 냉장고/냉동고/감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이 제공되며, 톨장의 형태는 타입별 상이합니다.
- ※ 비스포크 1도어 키친핏 냉장고/냉동고/감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도어 마감은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좌우타입 방향에 따라 상이 할수 있습니다.
- ※ 59티입은 비스포크 1도어 키친핏 냉장고/냉동고/감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본주방 길이가 축소되오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 비스포크 1도어 키친핏 냉장고/냉동고/감치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감치냉장고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제공되는 공간의 규격 및 배치는 타입별 상이합니다.
- ※ 13인치 홈네트워크 월패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인치 홈네트워크 월패드가 시공됩니다.
- ※ 13인치 스마트 주방TV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인치 일반 주방TV(유튜브, 인터넷 등 사용불가)가 시공됩니다.

3) 인테리어 특화 옵션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품목	위치	59	78A	78B	84A	84B	비고
개별옵션	유럽산 하이브리드 마루	전실	5,900,000	7,900,000	7,900,000	8,600,000	8,500,000	엘우드 / 텍사스 라이트 오크(시에나 브리즈) or 텍사스 브라운 (그라넷 모디쉬)
	3연동 슬라이딩 자동 중문	현관	4,600,000	4,700,000	4,700,000	4,700,000	4,700,000	현대L&C
마감특화	거실 아트월, 주방상판, 주방벽 세라믹 타일	거실 / 주방	8,500,000	9,600,000	9,800,000	11,300,000	10,200,000	플로림 / 플리마화이트 (시에나 브리즈) or 마블 칼라카타 (그라넷 모디쉬)
주방특화	전동하프미러 상부장 (주방창주변) / 외산 HW / 외산 주방수전	주방	4,900,000	6,000,000	5,100,000	8,100,000	5,300,000	
수납특화	프리미엄 시스템 선반	드레스룸	-	2,100,000	4,600,000	7,700,000	4,600,000	
욕실특화	바닥, 벽 유럽산 타일 / 유럽산 수전 / 유럽산 도기	욕실1, 욕실2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조명특화	거실 리니어 조명, 보조등 및 커튼박스조명 / 주방 우물천정 및 간접등 (59, 78A, 84A) / 안방, 침실1, 침실2 디밍 및 색온도 조절 (84B 알파룸 포함)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1,400,000	1,700,000	1,400,000	1,900,000	1,800,000	
			-	-	-	1,800,000	1,700,000	The Curated room 유상옵션 선택시 (침실2 디밍, 색온도 조절 미제공)
The Curated room	바닥 구조체 위 저소음 비닐바닥재 / 벽, 천정 흡음마감재 / 차음도어 / 마그네틱 트랙 조명	침실2	-	-	-	13,600,000	12,400,000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선택품목 선택 시 계약금(10%)는 계약시, 잔금(90%)는 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 상기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유럽산 하이브리드 마루는 자재 특성상 색상,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유럽산 하이브리드 유상옵션 선택 시 인테리어 스타일 무상선택에 따라 바닥재가 상이하게 제공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현관 중문은 시공상 중문을 또는 벽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음.
- ※ 현관 중문은 타입별 (개폐타입, 사이즈 등)이 다르며,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중문(자동)은 제품 특성상 주변 움직임에 따라 작동 될수 있습니다.
-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신발장의 형태,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장과 이웃하여 벽체가 조성됩니다.
-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인테리어 스타일 무상선택에 따라 마감재가 상이하게 제공되며, 임의로 선택 하실수 없습니다.
-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의 두께 차이에 따라 주방상판 두께 및 주방하부장의 높이는 견본주택 설치 높이와 상이하게 시공되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 주방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상부장의 규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상부장의 규격과 상이하게 시공되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 수납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시스템선반은 벽판별 고정 및 조명 적용으로 선반 이동이 불가합니다.
-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1, 욕실2 모두 적용기준으로 부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유럽산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거실 리니어 조명, 보조등, 거실커튼박스 조명, 주방 우물천정 크기는 타입별 상이합니다.
-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간접조명은 매입조명이 아니므로 원거리에서는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 타입(78B, 84B)은 평면 구조상 주방 우물천정(간접등 포함)이 별도 제공되지 않으며 거실 우물천정이 주방까지 확대되어 제공됩니다.
-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구의 타입 / 기능 / 수량 / 위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당 실의 스위치 타입 / 기능 / 회로수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 조명특화 유상옵션을 선택할 경우 안방, 침실조명에는 밝기 조절(디밍) 기능과 색온도 조절 기능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스위치의 기능/모양이 달라집니다. (옵션 미선택 시, 조명 On/Off 기능만 제공됨)
- ※ 조명특화 유상옵션을 선택할 경우 제공되는 거실 리니어 조명은 상,하부로 빛이 나오는 조명이며, 하부조명에는 밝기 조절(디밍) 기능과 색온도 조절 기능이 제공되며, 상부조명은 On/Off 기능으로만 제공됩니다.
- ※ 조명특화 유상옵션을 미선택할 경우 거실에는 메인 노출등과 우물천장 간접등이 제공되며, 메인 노출등에는 밝기 조절(디밍) 기능과 색온도 조절 기능이 제공되며, 우물천장 간접등은 On/Off 기능으로만 제공됩니다.
- ※ 조명특화 유상옵션을 미선택할 경우 거실 커튼박스에는 조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조명특화, The Curated Room 유상옵션 모두 선택 시 The Curated Room 유상옵션이 적용되는 침실2에는 디밍, 색온도 조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The Curated Room 선택 시 리니어 트랙조명 4EA, 스팟 트랙조명 4EA 이 제공되며, 조명기구의 수량/종류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 The Curated Room 선택 시 완벽한 방음 구조가 아니며 생활소음 저감은 가능하나 과도한 소음 발생 시 소음은 유출될수 있습니다.
- ※ The Curated Room 선택 시 바닥 구조체 조성으로 단차가 발생되며 본시공 시 단차의 높이는 조정될 수 있으며, 바닥 띄움 시공으로 바닥난방 효율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 The Curated Room 선택 시 바닥, 벽, 천정의 마감 두께가 증가하여 내경 사이즈, 천장고가 줄어들며, 본공사 시 PL창호(터닝도어) 상부에는 조명기기 간섭을 고려하여 상부에 입방이 조정 및 높이가 조정 될수 있습니다.
- ※ The Curated Room 선택 시 제공되는 조명용 트랙레일은 천장에서 노출되어 시공되며, 기본 제공되는 트랙용 조명기기는 변경 불가합니다.
- ※ The Curated Room 선택 시 트랙레일 설치 길이는 타입별 상이하며, 안전을 위해 레일 당 설치 가능한 최대 조명기구는 80W입니다. (레일 당 100W 안정기 설치됨) 등기구 이동 및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The Curated Room. 선택 시 설비 기기 설치 부위로 내부 소음이 외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 품목

구분	타입	위치	무상선택	
인테리어 스타일	전타입	거실 / 주방	시에나 브리즈	그라넷 무디쉬

- ※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거실아트월, 주방상판, 주방벽, 바닥재(강마루) 마감재가 스타일별 상이하게 제공되며,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춰 마감재가 제공됩니다.
- ※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마감재는 부분 선택 하실 수 없습니다.
- ※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한 발주 등을 고려하여 선택사항 변경 불가하며, 고객의 미회신 또는 미분양 등으로 인테리어 스타일이 선택 되지 않을 경우 전타입 '시에나 브리즈' 마감재가 제공됩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공사대금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계약금, 잔금)	KB국민은행	114001-04-215885	광안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1인)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최초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선택품목 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의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2001동 301호 홍길동 → "20010301홍길동", 2001동 1304호 홍길동 → "20011304홍길동")

XI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6년 06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독서실, 작은도서관, 스테디룸, 경로당 등],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휘트니스, 필라테스룸, 사우나샤워시설(남·여)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 2호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유효높이) :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7m 이상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능력(MMI 등급)	VII-0.204g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아파트 주 :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면적(외면적) : 2021.12.01.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40-38번지 일필 층수 : 지하2층, 지상31층 (1237세대) 면적 : 182,461.7689㎡ 건축물의주최자 : 공동주택 설계자 : ㈜푸르토텐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18-039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 2018.07.26. ~ 사용검사일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표부령 제2014-79호, 환경부고시 제2014-218호)

본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감정원장

2018년 07월 25일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아파트
- 신청자 :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평가등급 :

1) 소양관련등급			3) 환경관련등급		
인증항목	세부 성능목차	성능등급	인증항목	세부 성능목차	성능등급
양방향의 차단기능	---	★★★★	외장벽 단열	외장벽 상부 등단열재의 단열성	★★★★
양방향의 차단기능	---	★★★★	수직외벽 단열	수직외벽	---
외장벽 단열성능	---	★★★★	내외단열벽	내·외단열벽	---
내장벽 단열성능	---	★★★★	차단벽(단열재)의 단열성	단열재(단열재)의 단열성	★★★★
내장벽 단열성능	---	★★★★	외단열벽 단열성	외단열벽 단열성	---
내장벽 단열성능	---	★★★★	외단열벽 단열성	외단열벽 단열성	---
내장벽 단열성능	---	★★★★	외단열벽 단열성	외단열벽 단열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인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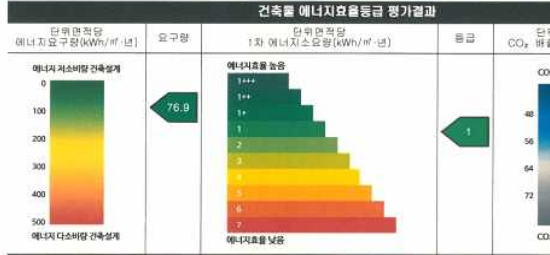
한국감정원장

2018. 07. 2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준공연도 : 2022년 06월 01일 주소 :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40-38 층수 : 지하2층 / 지상31층 면적 : 130032.4859(㎡)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푸르토텐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18-주-에-1-0226 평가자 : 정해민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m²·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5.4	50.5	40.1	10.6
급탕	30.7	33.5	24.9	6.8
조명	20.8	20.8	57.1	9.7
합계	76.9	108.6	132.6	28.9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 [실시됨] [설치되지 않음] 인증받았습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감정원장

2018년 07월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4-101-0002600호	392,770,3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소방 통신 감리
상호	(주)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케이아이씨	대원포비스(주)
금액	4,696,733,444	1,016,014,700	1,155,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광안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65,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수송동)
법인등록번호	184371-0002349	110111-0038805

XII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공통	<p>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영상,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정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인허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 북측에는 폭 12m~15m도로, 서측에는 폭 6.6m(구조물 포함)도로, 동측에는 폭 11~12m도로, 남측에는 폭 17.5~19m도로가 계획 되어있음. 남측으로는 구거가 설치되어 있고 경계에는 남측 광안자이 단지와의 레벨차이에 따른 옹벽 및 자연석쌓기등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남측 광안자이 경계부분에 폭 5m의 보행자 전용출입구가 설치됨에 따라 24시간 개방하여야 함. 또한 서측 도로를 따라 보행자통로(공공보행통로, 폭1.5m)가 단지 내부로 계획 되어있음.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보행통로는 막을 수 없음.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p>
	<p>단지 북측에는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광안 에일린의 뜰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에는 호암유치원, 광안 자이, 동측 금련산에 수영정이 배치되어 있고, 구역내에 종교시설 부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인근 시설로 조망, 소음, 불빛 등의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단지 서측으로 도로와 단지 내부로 도로변 보도(폭1.5m)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측 출입구와 남측 광안 자이 아파트단지 경계구간까지 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포함)가 설치되어 있어 단지 외</p>

	<p>주민의 보행과 주변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차량 불빛, 소음, 공기질 및 프라이버시 간섭 등의 사생활침해와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p> <p>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p>당 단지 북측의 완충녹지와 서측 경관녹지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한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p> <p>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음.</p> <p>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p>단지 주변도로,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자치센터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한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착공 및 분양이후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람.</p> <p>단지 주변 외부도로 기반시설의 보도부분(서측 소로3-1 도로변 보도 포함)의 바닥감 및 재료는 인·허가청 유관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여야 함.</p> <p>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분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p> <p>단지 서측으로 도로(소로3-1호)가 개설되어 있으며, 구역외부와의 레벨차이로 구역 경계에는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보강형 낙석방지책이 설치되어 있고, 구역 북측 경계에는 메시형 울타리가 설치된다. 또한 소로3-1호 도로 실사용대지경계선 내부로 보행로(폭1.5m)가 있고, 차량방호벽 및 차량방호난간이 설치되며, 실시공시 기술검토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보도개설을 위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양측으로 안전웬스가 설치될 수 있음.</p> <p>또한 일부 구간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으로 인하여 차량불빛, 소음, 공기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웬스는 차폐 웬스 등으로 구조물이 변경 설치될 수 있으며 관할시청 또는 구청과의 협의 등에 따라 관련 시설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낙석 방지책	단지 서측 소로3-1호 도로와 구역경계에는 낙석방지책(높이 3m)이 설치설치되며,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및 기술 검토 등에 따라 높이 및 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완충녹지 / 경관녹지	단지 북측의 완충녹지는 대지경계 레벨차이 구간에 조경석 쌓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완충녹지 내부로 산책로 및 계단 등이 조성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소음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공개공지 보행자 전용 출입구 열린가로쉼터	당 사업지 대지 경계내에 공공이 보도로 이용 가능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며, 단지 내부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소음 등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로 디자인(조경계획,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패턴, 폭) 등의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공개공지는 105동과 106동 사이에, 보행자 전용출입구는 105동 남서측 광안자이 아파트 경계와 101동 남서측 보도 부분 경계에 설치됨) 남측 문주 인접 도로변으로 열린 가로쉼터가 조성되며, 조망, 소음등의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구역경계	단지 내,외부, 보도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의 분양 홍보물의 표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인허가	<p>당 단지는 2017년 10월 최초 사업시행인가원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p> <p>분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p> <p>도시가스 정압기는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서 중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 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가로 3m * 세로4m * 높이 3m)를 단지내 제공 될 수도 있음</p> <p>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p> <p>단지 조경 상품 개선을 위한 설계가 진행될 수 있으며, 조경 관련 제반사항 (식재, 시설물, 포장 및 동선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p> <p>준공 시 소방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경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외부 소방시설 설치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p> <p>향후 공급면적(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설계변경 인·허가 변경 또는 준공 시 확정 측량, 공부정리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함.</p> <p>야간 경관 계획여부 및 계획 내용은 관련 심의 등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p>
분양홍보	견본주택, 분양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길 바람.

물 및 건본주택	<p>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p> <p>건본주택은 84Am², 84Bm²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계약자의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배치에 따라 건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p> <p>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p> <p>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p> <p>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컷(CG)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라며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p> <p>미건립 단위세대 타입은 건본주택 내에 비치된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p> <p>단위세대는 기본품목, 옵션품목, 전시품목이 혼합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자세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길 바람.</p> <p>단위세대 건립타입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p>단위세대 현관에 설치된 금속프레임은 연출용 마감재이며, 본 공사 시 방화문틀 및 방화문이 설치됨.</p> <p>단위세대 현관 외부의 건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품품목 및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적용되는 단위세대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p> <p>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p> <p>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CCTV, 소화기 등은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p>
	<p>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p> <p>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창틀모양, 옥상구조물의 위치, 높이, 형태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p> <p>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태양광 발전설비, 커튼월록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리 난간 및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5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으로 단지내,외부의 계획 레벨에 따라 각 동별 또는 각 호수라인별 상이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은 석재마감이 적용되어 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p> <p>추후 관련 심의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BI, 동호수 사인의 위치, 개소 및 조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p> <p>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단지내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문주, 부대복리시설(지역자치센터포함)과 데크 난간, 부대복리시설의 옥상시설물(정원,태양광패널,실외기 등) 가로등, 동출입구,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p> <p>단지 주변 도로 및 단지내 경사로 인해 경비실주변, 상가 및 단지 경계부, 입구 등에는 옹벽 및 계단이 추가될 수 있음.</p> <p>대지경계 내 보도 중 도로에 의해 Set-back된 구간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라 유지, 보수, 관리를 하여야 함.</p> <p>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당 단지는 확장시 거실과 전면부 일부 침실의 창호가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으로 거실과 침실로의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수 있음</p> <p>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이사짐, 택배, 구급 차량, 쓰레기이송(음식물쓰레기포함) 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p> <p>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 및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규모, 형태 등이 상이할수 있음.</p> <p>택배보관함은 지하1층 주차장 각동 출입구 주변에 배치되며, 세대 창고는 각동 지하 주동하부에 설치되며, 동별로 위치, 규모, 출입문의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음.</p> <p>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p> <p>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에서 조망될 수 있음.</p> <p>단지 101동 동측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주차 공간이 조성되어 인근에 배치된 동 저층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p> <p>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 될 수 있음.</p> <p>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 될 수 있음.</p> <p>동 하부 지하1층 또는 PIT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필로티 하부 또는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급기 DA 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사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수 있음. 각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p> <p>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물놀이터,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p> <p>단지 내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가벽 등 조경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p>

	<p>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p> <p>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식재가 제한되어 잔디로 마감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 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p> <p>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조경석 쌓기, 화계, 사면처리, 옹벽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사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p> <p>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코트정원 등),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공공공지,, 보행가로/산책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조망, 빗공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어린이 놀이터는 102동 남측, 107동 남측(물놀이) 유아놀이터는 103~104동 북측에 설치되며, 옥외 운동공간은 101동 북측, 106동 남동측(멀티코트), 109동 남측에 설치되어 있으며, 놀이터와 운동시설로 인하여 조망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옥상부에는 실외기실이 배치될 수 있고 자치센터 실외기 설치공간으로 인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시설 일부 옥상부에는 휴게 및 조경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 조망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단지 내 수경시설의 위치, 형태, 규모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p> <p>각층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단지내 물놀이 시설에는 수질 정화 장치가 설치되며, 물놀이 시설의 안전리를 위해 입주 후 사용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함.</p> <p>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p> <p>단지 남서측 경계부의 사면은 경사도가 급하여 수목식재가 되지 않으며 사면녹화방식의 씨딩(Seeding)이 이루어짐 .</p> <p>당 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인동거리 등을 해당 지역지구 및 관련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당 단지의 주동외관색채, 외벽줄눈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태양광집광판의 위치 및 각도,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출입구 문주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자치센터 포함)의 외관디자인(미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물딩,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인허가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음. 단,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 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p> <p>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 Ⅷ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4(g)로 설계되어 있음.</p> <p>아파트 옥상부에 의상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p> <p>스마트홈 IoT서비스(SKT NUGU 스마트홈 등)는 준공 후 3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p> <p>단위세대에 적용되는 SKAI 시스템(재질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입주자의 생활패턴을 학습하여 주거공간을 최적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SKAI)용 App.이 제공되며,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한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p>
단지출입구	<p>단지 차량진출입구는 남측과 북측에 각 1개소씩 설치되며, 동측에 아파트 전용 차량 출구, 북측에 근린생활시설과 자치센터 차량진출입구가 있으며, 주차차단기가 설치되며, 단지내 지하주차장 입구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101동, 102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9동, 110동의 저층세대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빗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단지 주출입구 측 관리사무소 인근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스테이션이 설치되며, 전문 차량으로 주기적인 수거 시 인근 101동, 102동, 주출입구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필로티등	<p>102~103동(2,5호라인), 104,106,107동 (4호라인), 109동 (3호라인), 110동 1층은 주동출입을 위한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동 출입구의 내외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로 상이할 수 있음.</p> <p>101동 지상에 면한 PIT층의 경우 주동출입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필로티 설치 주동 코어별 1층 E.V홀 출입부 전실 천정고는 설비배관 및 시설물(에어커튼) 설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p>
동출입구	<p>동 출입구(필로티형 포함) 크기 및 형태는 실시공시 기술검토 및 인허가청 협의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소방협의를 따라 상부세대 피난을 위한 사다리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도 있음.</p>
아파트 주동	<p>105동, 106동 인접 지하층에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수조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06동, 107동, 109, 110동 북측 단지외에는 완충 녹지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09동 4,5,6호, 110동 1,2,3,4호 라인 4층까지는 약10M 옹벽에 면하여 일조,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7동 4,5,6호 라인 3층까지는 7M 지하주차장 데크에 면하여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106동 4,5,6호 라인 3층까지는 7M 지하주차장 데크에 면하여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5동 2,3,4,5호 라인 3층까지는 6.2M 지하주차장 데크에 면하여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동,서,남,북측으로 단지의 도시계획도로가 위치하여, 인접동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5동과 106동 사이는 공개공지 및 인접 단지로의 공공보행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동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고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3동, 104동, 105동 북측에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2, 103, 104, 106, 107동 옥상층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등을 구조할 수 있는 직경 10M구조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최상층 및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적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동 코어 및 필로티 벽면, 주동측벽에 DA, 주동 하부 주민공동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6동2호, 107동1호,108동 1호 라인 1층 창호에 하부 데크주차장 상부 난간이 설치되어 조망 및 채광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1호, 103동1호, 106동2호, 107동1호, 108동1호, 109동1호 라인 1층 창호에 하부 데크주차장 상부 난간이 설치되어 조망 및 채광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옥상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스템용 탈취배기관이 설치가 되며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102동, 103동, 측벽에 설치되는 조명, 옥상 조명 및 동 저층부에 설치되는 동호수 표기(조명형) 및 각종 야간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외기에 면하는 계단실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최상층 1개소, 최하층 1개소 및 중간층 5개층 마다 1개소씩(동별/ 호수별 층수에 따라 상이하)만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고 나머지 층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됨. 다만, 그 위치, 크기 등은 본공사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정,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주동 기준층 엘리베이터 공용홀에는 개폐가능한 창호1개소가 설치되며 코어별 창호 유무, 사이즈 및 채광정도는 상이하며, 일부 방화구획에 따라 고정창이 설치되며, 유리의 사양이 다를 수 있음.
	101동, 102동, 105동, 106동, 110동 옥상에는 태양광패널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조망 및 눈부심 등의 환경적 침해를 발생할 수 있음.
	107동 옥상에는 옥상수조가 설치됨.
	각 주동하부에 세대당 1개소의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각 세대의 세대창고 위치는 지하1개~2개층에서 연결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나, 일부 동의 경우는 분산되어 설치 될 수 있고, 입주시 배정되며, 배정된 위치에 따라 각 세대에서 세대창고 간의 이동거리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 본공사 시 창고의 외부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철망으로 계획되어 있음. 또한 지하층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되어, 결로 습기 등에 취약할 수 있으며, 세대창고의 위치, 제조사 및 사양, 마감, 선반형태 및 위치, 시공디테일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세대창고 공간,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주차구획 포함)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기 바람.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될 예정임.
	단지 서측으로 대기경계선까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이 설치되어 108동, 109동, 110동 저층부의 경우 일조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측 차도와 보도 개설에 따라 추가 옹벽 및 헨스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음.
	주동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일부 2층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고정창 적용)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음.
주동 엘리베이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101동~104동, 106,107,110동 모두 코어별 2대의 승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105동은 1,2,3호 라인은 2대, 4,5호 라인은 1대의 승강기가 108, 109동은 코어별 1대의 승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외부코어	108동과 109동 사이 외부코어#1(엘리베이터 및 계단)는 B구역 지하2층부터 지반층(EL+31.20), A구역 지하2층에서 지반층(EL+38.2)까지 운행되므로 주민공동시설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
	107동 남동측에 설치되는 외부코어#2(엘리베이터 및 계단)는 B구역 지하2층부터 지반층(EL+31.20), C구역 지하2층에서 지반층(EL+24.2)까지 운행되므로 주민공동시설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
	106동 남동측에 설치되는 외부코어#3(엘리베이터 및 계단)는 C구역 지하2층부터 지반층(EL+24.2)와 지반층(EL+18.0)까지 운행되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
	티하우스 인접하여 설치되는 외부 코어#4(엘리베이터 및 계단)는 D구역 지하2층부터 지반층(EL+18.0)까지 운행되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
	외부계단#5는 지반층(EL+18.0)에서 지반층(EL+23.0)까지 외부로만 연결하는 계단으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
	101동 북측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에서 지상1층까지 주민공동시설 내에서만 설치되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
	북측 근린생활시설#1인접하여 설치되는 옥외엘리베이터는 근린생활시설 진입층에서 지반층(EL+18.0)까지 운행되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
	외부코어 계단실의 창호 형태 및 개구부의 크기, 개폐유무 등은 실시공시 기술검토 및 사용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무인택배	각 동별 지하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인근에 코어별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하.
지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까지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주차차단기 설치위치는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주차장	<p>지하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지하1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9동 110동 사이 지하1층 주차장 주행통로 일부구간 지상부 비상차로 경사에 따른 통과 높이 2.35~2.7m 구간이 있음 .</p>
	<p>지하주차장 층별 각 중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중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p>
	<p>지하주차장 지하1층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p>
	<p>101,102, 104,105,106,107,109,110동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주진입로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지하1,2층 주차장 일반주차 폭 2.4m, 확장주차 폭 2.5m ,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일반주차 폭이 2.3m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관련 부서협의시 크기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p>
	<p>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p>
	<p>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허가시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데크형 주차장으로 지반에 면한 벽면 중 일부 오픈 구간은 빗물 등이 유입될수도 있으며, 바닥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음.</p>
	<p>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p>
	<p>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p>
	<p>지하주차장은 단지내 레벨차에 따라 4개의 구역(A,B,C,D구역)으로 나뉘어 각 구역마다 지하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구역간 보행동선은 별도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진입 가능하며, 구역별 레벨에 따라 계단의 단수,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문의 위치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구역은 계단실 출입문이 주차면과 간섭이 있을수 있음. 또한 구역별로 주차대수와의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A구역 : 110동,109동,108동), B구역 : 107동, C구역 : 106동, D구역 : 101동,102동,103동,104동,105동)</p>
	<p>발전기실/ 전기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p>
	부대 복리시설
<p>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구간 가족주차(이중 주차)를 위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자 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사항임.</p>	
<p>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엘리베이터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p>	
<p>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자 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사항임.</p>	
<p>근린생활시설, 자치센터,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자치센터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시야간섭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 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p>	
<p>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근린생활시설(1,2,3)과 자치센터의 주차장은 단지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분리하여 구획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되는 이동 동선은 없음.</p>	
<p>근린생활시설(1,2,3) 전면 도로의 레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개별상가의 창호크기와 천장고는 다를수 있으며, 사인부착위치 및 캐노피 유무와 높이가 다름. 또한 도로의 경사에 따라 전면 보도에 경사로 및 계단이 설치될수 있음.</p>	
<p>근린생활시설1,2 및 주민자치센터의 전면보도에는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보도와 도로 경계에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용 난간이 설치됨.</p>	
<p>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는 외부차량 진입시 차량 대기가 발생할수 있음.</p>	
<p>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자치센터는 별도의 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되지 않음.</p>	
<p>부대시설(샤워시설/사우나용) 급탕보일러의 배기 연도가 선근 상부에 설치가 되며 이로인해 증기, 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필라테스, 사우나 등은 101동 북측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상층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별도 설치됨.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경로당,어린이집,작은도서관,독서실은 북측 근린생활시설 상부 별도 건물에 위치하며, 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지상1층,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은 지상2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시설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건물 내·외부에 설치되고,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팬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p> <p>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p> <p>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p> <p>통학차량대기공간(클린에어 스테이션)은 단지 남측 차량출입구 아이코닉 티하우스와 공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차량 동선 및 차량 대기공간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시와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p> <p>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p>
	공급시설	<p>101동 105동, 106동 지하층에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수조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문주 및 경비실	<p>단지 남측과 북측에 설치되는 주문주, 부문주 계획으로 인하여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p> <p>주출입구, 부출입구에 경비실이 각 1개소 설치되며,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차량 대기가 발생 할 수 있음. 단지 동측에 아파트 전용출구의 경우 진입차단용 차단기가 설치되며 진출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p>
단위세대	공통사항	<p>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벽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p> <p>단위세대 미러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p> <p>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p> <p>계약자가 개별적으로 가구 설치 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규격을 확인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p> <p>일부타입은 발코니 2(보조주방)의 공간이 협소하여 계약자가 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공간 사이즈 확인 후 설치 바람.</p> <p>일부타입은 세탁기 및 건조기 2단 설치 시 외부 창호 개폐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설치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제공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주택형별 기본제공품목 및 유상옵션품목은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아울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p> <p>주택형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스템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함.</p> <p>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p> <p>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p> <p>단위세대의 마감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p> <p>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p> <p>단위세대의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실 시공 시 세대 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단위세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 및 가구설치 등으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p> <p>단위세대의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p> <p>단위세대의 단차부(발코니/욕실/현관 등)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함.</p> <p>단위세대의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p>

	단위세대의 마감자재 구성은 평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에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단위세대의 마감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음.
	공장 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단위세대의 강마루는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 패턴지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위세대의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로 인한 장시간 수분 노출 시 표면재의 변형, 하지 비틀림 등 우려로 주의하시기 바람.
	단위세대의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거실 우물천장 몰딩 디자인 및 규격(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의 창호 및 목창호의 형태 및 위치, 열림방향은 본 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의 목창호(침실 및 욕실도어)의 프레임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단위세대의 목창호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 됨.
	단위세대의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 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 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단위세대의 타일(현관,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마감의 적용부위의 나누기도 및 줄눈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공사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단위세대의 인조석(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하며, 이음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의 인조석(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자재는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단위세대의 가구(일반, 주방)마감, 규격, 구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단위세대의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서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의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각실의 도어 후면 상부에 벽체와 하드웨어의 간섭 방지를 위한 일자형 도어스토퍼가 설치됨.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 설치한 마감재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세대 내 설계변경(구성, 설치위치, 마감재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음.
	개인적으로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해야함.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2 일부 구간은 난방배관이 적용됨.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다용도실 내 천정이 설치되며, 천정 설비 배관 등으로 인해, 타입별 천정 높이가 상이할 수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	지상1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필로티 직상 세대(2층)는 하향식 피난구 미설치 되어 완강기가 설치 예정이며, 소방 협의에 따라 피난동선 및 피난설비가 변경될 수 있음. 당 사업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적용되어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대피공간이 아니므로 방화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피난용 하향식 피난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피난구가 노출되어 있음. 하향식 피난구는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 및 하부PIT세대는 설치되지 않으나 소방 협의에 따라 설치될 수 있으며, 피난동선 및 피난설비가 변경될 수 있음.
제공품목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 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위치에 대형타일(600*1200)이 시공되며 인테리어 스타일에 따라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및 나누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현관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구공사	주택평형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재 및 사양, 제공유무 등이 상이하오니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건립세대의 주방가구는 유상옵션 선택 시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옵션 미선택한 가구의 수납양과 구성이 다소 차이가 있음.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적용 및 점검 용이성을 위해 주방가구 하부장 측면판이 미제공 또는 점검구 형태로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하부장 내부의 구성,형태,크기,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를 위한 음식물 투입구 하부장은 이송을 위한 장치 설치로 수납이 불가함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위치는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기본 및 유상옵션으로 설치되는 가구는 마감재 설치, 전기배선 등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가구(일반, 주방, 욕실, 시스템선반)마감, 규격, 구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서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가구류(일반, 주방, 욕실)의 설치부위의 노출되지않은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가 미시공 됨.
	가구류의 하드웨어, 액세서리,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가구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세대 내 적용되어있는 거울(현관, 침실, 욕실 등)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주방상판은 물턱이 없으며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주방 가스배관이 벽체 내 매립됨에 따라 추후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가구장 교체 시 벽체 타공 및 벽체 구조 변경이 필요 할 시 반드시 관리자를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주방 렌지후드가 적용되는 상부장의 내부에 주방 자동식 소화장치가 설치되며, 수납공간 활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싱크장(싱크볼이 적용되는 하부장) 내부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싱크장의 깊이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주방상부장 조명용 DC컨버터가 주방상부 코너장에 설치되어 수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 조명, DC컨버터교체 필요 시 사용자가 교체 해야 함.
	파우더 조명일체형거울에는 DC컨버터가 내장되어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 조명, DC컨버터 교체 필요 시 사용자가 교체 해야함.
	주방가구 기본/유상 선택에 따라 상부장의 높이가 상이하게 제공됨.
	쿡탑 기본/유상 선택에 따라 후드장의 크기 및 주방후드의 설치 위치는 상이하게 제공됨.
시스템선반(기본제공, 옵션선택품목 포함), 욕실장, 샤워부스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 및 레이아웃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창호공사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거실, 침실(36 침실, 59 및 78A의 침실2와 100및115의 침실3제외), 알파룸의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FL기준 H:1,200으로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실외기 그릴(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음.
	주방창호의 경우 와이드 풀다운 창으로 수전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외부에는 기술검토와 인허가 등에 따라 철재 난간이 설치 될 수도 있음.
	본공사 시 세대 창호의 위치는 미관을 고려한 주변마감을 위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음.
본공사 시 발코니2 ABS 도어 하부에는 오토도어실 및 문틀에는 가스켓이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성을 고려하여 바닥단차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전기/설비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임.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욕실내 샤워부스와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음.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음.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후면벽체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됨.
	동(세대)별 가스배관이 2층 외부에서 세대로 인입되며 외부 노출 부분은 방범커버가 설치됨.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주방 가스배관이 벽체 내 매립됨에 따라 추후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가구장 교체 시 벽체 타공 및 벽체 구조 변경이 필요 할 시 반드시 관리자를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어린이집,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발코니) 수전 높이 및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사이즈 및 높이가 조절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투입구 위치 및 사양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입구 하부장은 장비 설치로 인해 수납공간으로 사용이 어려움.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 보일러 연도로 일부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분전함 / 통신단자함은 침실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 기준으로 적용되며, 일부 보조조명 등은 다른 색온도로 적용될 예정임.
	전기쿠팡, 전기레인지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쿠팡, 전기레인지어를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함.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최상층 세대의 전기 배관/배선은 이중천장 내 노출 시공될 수 있음.
	필로티 직상 세대(2층)는 피난 사다리 미설치 되어 완강기가 설치 예정임.
	84B 타입 세대에는 안방과 알파룸 사이 벽체에 에어컨 드레인 배관이 매립되어 추 후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벽체 제거가 불가함.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발코니 및 실외기실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또는 실외기 설치를 위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음.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다용도실 내부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며, 실시공시 위치 및 천장의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안방 또는 침실 전면 비확장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와 스위치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유상옵션	■ 공통안내
	유상옵션 품목은 주택형별 평면의 형태, 실의 크기, 실의 구성 등에 따라 제공되는 품목이 상이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유상옵션 품목에 관한 상세 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유상옵션 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 예정임.
	임대세대의 경우, 이형세대에 적용된 유상옵션의 품목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제공 품목이 상이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람.
	유상옵션 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유상옵션 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유상옵션 품목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확장 기본형)안으로 시공됨.

※ 주의사항

-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②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④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⑤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내·외부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⑧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시 변경됨.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XIII

기타 유의사항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드파인광안' 홈페이지(<https://www.df-ga.co.kr>)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드파인광안' 견본주택(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136번지) | ☎051-757-8856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